

2020년도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20년도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9월 10일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단 사업단장

<연구사업 개요>

○ 사업 목적

공익적 가치 중심의 임상연구 지원을 통해 다양한 의료기술 간 비교효과성 등의 근거를 생성하고 이를 임상현장 및 정책과 연계함으로써 국민건강 향상과 보건의료체계 지속가능한 운영을 지원함

○ 사업 범위

허가 후 통용되고 있는 의료기술에 대한 임상연구, 중개연구 분류에서 T3 및 T4 구간에 해당

○ 사업 구조

세부사업	① 의료기술 비교평가 연구	② 의료기술 근거생성 연구
사업내용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의료기술 간 상대적 효과성 및 비용효과성에 관한 비교평가연구	임상현장에서 활용되고 있지만 안전성·유효성의 의학적 근거가 불충분한 의료기술에 대한 근거산출연구
세부과제 유형 및 특성	전향연구 (다기관·다학제 구성) - 무작위배정비교임상시험(RCT)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 특성에 따라 실용임상시험(PCT), 또는 전향적 코호트 연구 가능	전향연구 (다기관·다학제 구성) - 무작위배정비교임상시험(RCT), 또는 실용임상시험(PCT), 또는 전향적 코호트 연구 - 보건의료서비스 연구의 경우, 위의 전향적 연구설계를 반드시 포함하되 필요 시 질적·양적 연구방법론 추가 가능
	후향연구 - 다양한 후향적 자료 및 2차자료원을 활용한 성과연구, 또는 소규모 전향연구	후향연구 - 다양한 후향적 자료 및 2차자료원을 활용한 성과연구, 또는 소규모 전향연구

I. 공고 개요

※ RFP별 상세 지원내용은 ‘사업별 제안요청서(RFP)’ 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시된 연구비는 부처의 예산사정 등으로 조정될 수 있으며, 선정평가 후 적절한 과제가 없을 시에는 과제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사업명	공고단위 (RFP명)	지정 주제	지원규모	지원기간	지원 대상	과제 구성 요건	선정예정 과제 수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	의료기술 비교평가 전향연구	1~9	500백만원 이내/년 (1차년도 375백만원 이내)	5(3+2)년 이내 (1차년도는 '21.3.19.까지)	학·연·병	해당 RFP 참조	23개 내외
	의료기술 근거생성 전향연구	1~10	500백만원 이내/년 (1차년도 375백만원 이내)	5(3+2)년 이내 (1차년도는 '21.3.19.까지)			
		11	350백만원 이내/년 (1차년도 262.5백만원 이내)	5(3+2)년 이내 (1차년도는 '21.3.19.까지)			
		12, 13	250백만원 이내/년 (1차년도 187.5백만원 이내)	5(3+2)년 이내 (1차년도는 '21.3.19.까지)			
	의료기술 비교평가 후향연구	1, 2	100백만원 이내/년 (1차년도 75백만원 이내)	1년 6개월 이내 (1차년도는 '21.3.19.까지)			4개 내외
	의료기술 근거생성 후향연구	1	100백만원 이내/년 (1차년도 50백만원 이내)	1년 6개월 이내 (1차년도는 '21.3.19.까지)			
2		100백만원 이내/년 (1차년도 75백만원 이내)	1년 6개월 이내 (1차년도는 '21.3.19.까지)				

○ 지원기간

전향연구 (5년 이내)	1단계	1차년도 연구기간: 연구개시일 ~ 2021. 03. 19. 2차년도 연구기간: 2021. 03. 20. ~ 2021. 12. 31. 3차년도 연구기간: 2022. 01. 01. ~ 2022. 12. 31.
	2단계	4차년도 연구기간: 2023. 01. 01. ~ 2023. 12. 31. 5차년도 연구기간: 2024. 01. 01. ~ 2024. 12. 31.
후향연구 (2년 이내)	단계없음	1차년도 연구기간: 연구개시일 ~ 2021. 03. 19 2차년도 연구기간: 2021. 03. 20. ~ 2021. 12. 31

II. 신청 요건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 국·공립 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기관·단체(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

□ 신청 제한

-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연구자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수 제한 기준에 저촉되는 연구자
 -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11조제2항에 따라 연구자가 참여연구원으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주관 또는 세부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임
- ※ 위탁연구책임자 및 위탁과제 참여연구원은 신청 제한 대상이 아님
- ※ 신규과제 신청 시 현재 수행중인 과제가 신청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될 때에는 해당 과제를 참여 제한 대상과제에 포함하지 않음
 - * 세부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7-5호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수 제한 기준」 참조

-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후에 참여 제한에 대한 사전요건심사를 실시하므로 주관·세부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 신청 전 본인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수 점검을 실시하여 과제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 요망
- 주관 및 세부 연구책임자가 참여 제한기준을 초과할 경우, 선정과제가 탈락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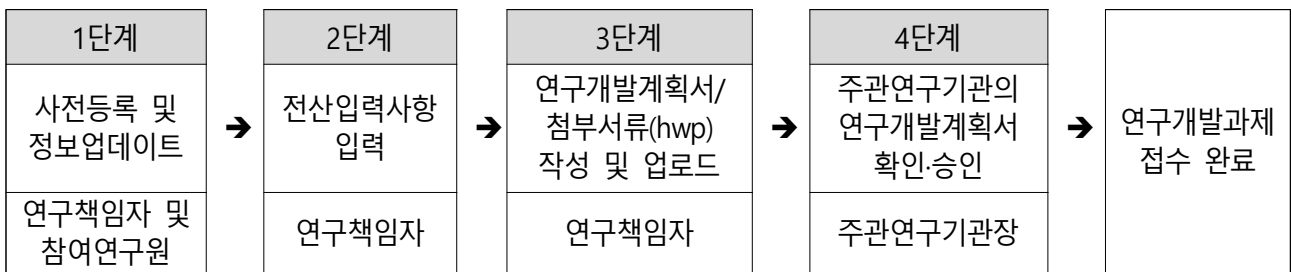
□ 주관/참여 연구책임자 자격

- 연구책임자는 해당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 인력이어야 함
 - ※ 연구과제 수행 중 정년퇴직으로 연구책임자의 자격요건 상실이 예정된 경우는 과제 신청 시 주관연구기관 명의의 퇴직 이후 고용유지 협약서를 제출해야 함

Ⅲ.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www.htdream.kr)에 전산입력 및 연구개발계획서/첨부서류 파일 업로드 (별도의 인쇄본 제출 없음)
 - ※ 연구자, 연구기관, 참여기업 등에 대한 정보는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에 사전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이미 등록된 경우는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 요망
- 주관연구기관의 공인인증서를 활용한(전자인증) 과제 신청 확인 및 승인
 - ※ 기관용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주관연구기관장의 과제신청 공문을 별도로 제출



※ 자세한 내용은 공모안내서 참조

□ 서류제출기한

- ※ 공고단위(RFP)별 신청마감 시간(14:00:00) 엄수 (마감 시간이후 연장 불가)
- ※ RFP별 구두평가 일정 및 경쟁률 등 기타 평가관련 사항은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www.htdream.kr)에 공지함
- ※ 상기 일정은 평가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공고단위 (RFP명)	연구책임자 과제신청 (전산입력) 마감일	주관연구기관 전자인증 (또는 공문제출) 마감일
의료기술 비교평가 전향연구	2020. 10. 12.(월) 14:00	2020. 10. 12.(월) 16:00
의료기술 비교평가 후향연구		
의료기술 근거생성 전향연구		
의료기술 근거생성 후향연구		

IV. 관련 법령 및 규정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평가지침」,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관리지침」 등
- ※ 관련규정은 www.htdream.kr → 자료실 → 관련법규에서 확인

V. 기타

- 연구시설·장비 도입시 유의사항
 - 연구시설·장비(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도입 심의
 -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시 '연구장비예산심의요청서(3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을 작성·첨부하여 '과제평가단'의 심의를 받아야 함
 -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구축할 경우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에서 심의 실시(선정과제 별도 안내)

VI. 문의처

담당 내용	연락처	
RFP 내용 (연구개발1팀)	pacen1@neca.re.kr	pacen@neca.re.kr
임상연구자료 (연구개발2팀)	pacen2@neca.re.kr	
연구비 및 평가 관련 (평가관리팀)	pacen3@neca.re.kr	

※ 자세한 내용은 공모안내서 참조